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346 호

2000 년 10 월 9 일 월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6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7호(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4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8호(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 처리규칙등중개정규칙)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9호(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12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57호(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규정중개정규정) 16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58호(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 처리규정등중개정규정) 22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22호(공시송달공고)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23호(공시송달공고) 2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0. 6.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6호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중 제37호의 세외수입 업무의 단서를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한함"으로 하고, 동조 "제38호 및 제39호"를 "제19조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동조 제40호, 제41호, 제43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42호"를 "제19조 제16호"로 하고, 동조 "제43호 내지 제48호"를 "제42호 내지 제47호"로 한다.

제15조중 "제4호 다음의 "중소기업 육성관리"를 삽입하고, "제5호 내지 105호"를 "제6호 내지 제106호"로 한다.

제19조중 "제14호 및 제15호"를 제7조의 "제38호 및 제39호"로 하고, 동조 제14호 및 제15호중 단서를 삭제 하고, 동조 제15호 다음의 "제16호 건축물 표시변경 업무"를 삽입하고, 동조 "16호 내지 제20호"를 "제17호 내지 제21호"로 하고, 동조 제21호 및 제2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21호 및 제22호"를 "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동조 "제23호 내지 제29호"를 "제24호 내지 제30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0. 6.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1,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직종별	계급(등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672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569	
	3급	1	행정1
	4급	5	행정2, 시설1, 행정·임업1, 보건·의무1
	5급	38	행정26, 토목1, 의무3, 건축1, 행정·지적1, 행정·토목1 행정·보건·환경2, 행정·토목·전산1, 행정·화공 ·기계·환경1, 행정·토목·임업·농업1
	6급	86	행정53, 전산·통신1, 지적2, 토목3, 건축3, 임업1, 행정·토목· 임업1, 토목·임업1, 약무2, 세무·행정7, 행정·환경1, 행정·환경 ·화공1, 행정·보건2, 행정·농업1, 행정·기계1, 행정·화공1, 행정·토목·건축1, 보건·약무·간호1, 행정·보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1, 토목·건축1
	7급	171	행정101, 토목9, 전산1, 전기2, 건축8, 세무6, 환경4 보건6, 지적3, 농업1, 기계1, 화공1, 수산1, 임업2 간호3, 의료기술1, 사회복지8, 통신·전자·통신1, 세무·행정2, 환경·화공1, 토목·건축9
	8급	170	행정98, 전산5, 건축7, 토목7, 세무10, 환경3, 보건8 화공2, 기계1, 지적5, 농업1, 수산1, 전기2, 임업1 간호3, 의료기술1, 사회복지7, 세무·행정4, 토목·건축3, 기계·전기·화공1
	9급	98	행정53, 세무11, 환경2, 보건3, 축산1, 임업3, 기계1 토목5, 건축1, 지적1, 의료기술1, 사회복지13, 세무· 행정3

[별표2]

구본청에 두는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직종별	계급(등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433	
정무직	소계	1	
일반직	소계	353	
	3급	1	행정1
	4급	3	행정1, 시설1, 행정·임업1
	5급	15	행정10, 토목1, 건축1, 행정·지적1, 행정·토목1 행정·보건·환경1
	6급	61	행정37, 전산·통신1, 건축3, 지적2, 토목3, 세무·행정6, 행정·환경1, 행정·환경·화공1, 행정·보건2, 행정·농업1, 임업1, 토목·건축1, 행정·화공1, 행정·토목·건축1
	7급	112	행정60, 토목9, 전산1, 전기2, 건축8, 세무6, 환경3 보건3, 지적3, 농업1, 기계1, 화공1, 수산1, 임업2 통신·전자통신1, 세무·행정2, 환경·화공1, 토목·건축7
	8급	108	행정50, 전산5, 건축7, 토목7, 세무10, 환경3, 보건5, 화공2, 기계1, 지적5, 농업1, 수산1, 전기2, 임업1, 세무·행정4, 토목·건축3, 기계·전기·화공1
	9급	53	행정26, 세무11, 환경2, 보건2, 축산1, 임업2, 토목5 지적1, 세무·행정3
별정직	소계	3	
	7급	3	여성복지1, 아동복지1, 비서1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등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0. 6.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8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등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제3조제3항중 “실·과장”을 “실·과·담당관”으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의 예외사항은 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 제2조제2항중 “각국·실·과장”을 “각국·실·과·담당관”으로 한다.

동규칙중 “실·과”로 인용한 경우를 “”실·과·담당관“으로 하고 “실·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실·과장·담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중 “기획조직관리담당·구정홍보담당”을 “기획조직담당·홍보기획담당”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남동구자체감사규칙중개정규칙) 제9조제1항중 “각과장”을 “실·과장·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인계인수규칙중개정규칙) 제3조제3항중 “실,과”를 “실, 과,

담당관”으로 한다

동규칙중 “실,과”로 인용한 경우 “실,과,담당관”으로 하고 “실, 과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실,과장,담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 제4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동 규칙 제17조 제2항 관련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5조 제2 항,제3항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 서식, 제2호서식을 [별지1], [별지2]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칙중개정규칙)제11조제2항,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14조제2항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2조제1항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2조제1항제8호의 분임지출원중 “주차단속담당”을 “교통행정담당”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10호중 ”주차단속담당“을 “교통행정담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8월14일 부터 소급적용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0. 6.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51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②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등의 용자를 위해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재원으로 구에서 조성하는 기금을 말한다.
- ③ “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의 관리 및 용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구금고를 말한다.
- ④ “이자보전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대출한 용자금의 이자중 기업을 대신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액을 말한다.
- ⑤ “재무제표”라 함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조원가명세서를 말한다.

제2장 기 금 관 리

제3조(기금운용협약)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예치 및 운용방법에 대하여 매년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 ①기금은 출연금과 출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로 운용한다.

②출연금은 재예치하는 경우와 사업의 폐지를 제외하고는 지출할 수 없다.

③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이차보전금 지급 및 기금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④전항의 이차보전금 지급시기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3장 융자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구청장은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회경제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2. 금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자 1인
3. 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4.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5. 한국산업단지공단북부지역본부 남동지원처장

④위촉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위원중 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고 그 임기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의 결정

2. 용자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용자에 관한사항

제10조(용자의 제한) 인천광역시 및 타 구·군에서 지원하는 동일한 용도의 자금을 용자받은 업체는 용자금을 전액 상환하기까지는 용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서 정한 용자결정금액이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업체당 용자한도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내에서 용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 후 관 리

제15조(사후관리기간)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 기간은 대출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실적서 제출 등) ①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중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지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에서 사용내역에 대하여 점검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정상가동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성과분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내역 점검결과에 의하여 성과분석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18조(변경신고) ①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 성명(법인의 대표와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신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행촉구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19조(선정취소) 선정된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세 및 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자.
3. 휴·폐업중인 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자.
5. 자금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6. 기타 자금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조례 제10조 제3항의 이차보전금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원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0. 6.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5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분청에 실·과별 지방직공무원의 직급과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기획감사실	계		36	
	일반직	소 계	3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전산·통신1
		7급	14	행정11, 토목1, 전산1, 통신·전자통신1
		8급	9	행정6, 전산3
		9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5	
			5	사서1, 전산1, 교환2, 조무1
문화홍보실	계		21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5	행정5
		8급	5	행정5
		9급	4	행정4
	기능직	소 계	2	
			2	기계1, 조무(조무)1
총 무 과	계		34	
	정무직		1	
	일반직	소 계	29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10	행정10
		8급	6	행정6
		9급	4	행정4
	별정직	7급	1	비서1
	기능직	소 계	3	
			3	기계1, 조무(조무)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허가재무과	계		49	
	일반직	소 계	23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건축1
		7급	9	행정2,전기1,토목1,건축3,보전1,환경1
		8급	7	행정2,건축2,토목1,기계1,보전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 계	26	
			26	기계2, 운전23, 사무보조(워드)1
세 무 과	계		54	
	일반직	소 계	50	
		5급	1	행정1
		6급	6	세 무 · 행정6
		7급	10	행정2, 세 무 · 행정2, 세 무6
		8급	18	행정2, 세 무10, 세 무 · 행정4, 전산2
		9급	15	행정1, 세 무11, 세 무 · 행정3
	기능직	소 계	4	
			4	조무(조무)4
민원지적과	계		41	
	일반직	소 계	38	
		5급	1	행정 · 지적1
		6급	4	행정2, 지적2
		7급	9	행정6, 지적3
		8급	19	행정12, 토목1, 건축1, 지적5
		9급	5	행정4, 지적1
	기능직	소 계	3	
			3	조무(사송)1, 조무(조무)2
주민자치담당관	계		4	
	일반직	소 계	4	
		4급	-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1	행정1
		9급	-	
	기능직	소 계	-	
			-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사회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 계	15	
		4급	1	행정·임업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4	행정4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별정직	소 계	1	
		7급	1	아동복지1
	기능직	소 계	3	
			3	사무보조(워드)1, 조무(조무)2
청 소 과	계		23	
	일반직	소 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환경1
		7급	5	행정4, 환경1
		8급	5	행정2, 환경2, 보건1
		9급	2	환경1, 행정1
	기능직	소 계	6	
			6	운전원3, 조무(조무)3
환경위생과	계		20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1, 행정·보건2, 행정·환경1
		7급	5	행정1, 환경1, 보건2, 환경·화공1
		8급	5	보건3, 화공1, 환경1
		9급	4	행정1, 환경1, 보건2
	기능직	소 계	1	
			1	조무(조무)1
지역경제과	계		20	
	일반직	소 계	19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행정·농업1, 행정·화공1
		7급	7	행정3, 농업1, 기계1, 화공1, 수산1
		8급	5	행정1, 농업1, 수산1, 화공1, 전기1
		9급	3	행정2, 축산1
	기능직	소 계	1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정비과	계		33	
	일반직	소 계	30	
		4급	1	시설1
		5급	1	행정·토목1
		6급	5	행정2, 토목1, 토목·건축1, 임업1,
		7급	10	행정3, 토목3, 토목·건축1, 임업2, 건축1
		8급	9	행정3, 건축2, 토목3, 임업1
		9급	4	행정1, 임업2, 토목1
	기능직	소 계	-	
			-	
	고용직	소 계	3	
			3	지도원3
건설과	계		39	
	일반직	소 계	29	
		5급	1	토목1
		6급	4	행정1, 토목2, 행정·토목·건축1
		7급	13	행정2, 토목4, 전기, 건축, 토목·건축5
		8급	7	행정, 토목, 토목·건축, 기계·전기·화공
		9급	4	토목3, 행정1
	기능직	소 계	7	
			7	기계3, 전기2, 조무(조무)2
	고용직	소 계	3	지도원3
건축과	계		17	
	일반직	소 계	12	
		5급	1	건축1
		6급	3	행정1, 건축2
		7급	4	건축3, 토목·건축1
		8급	4	행정1, 건축2, 전기1
		9급	-	
	기능직	소 계	4	
			4	기계1, 건축1, 조무(조무)2
	고용직	소 계	1	지도원1
교통과	계		23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6	행정6
		8급	5	행정5,
		9급	3	행정2, 토목1
	기능직	소 계	5	
			5	조무(조무), 조무(주차단속), 사무보조(위드)2

[별표2]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직종별	계급(등급)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역
합 계		19	
일반직	소계	10	
	4급	1	행정1
	5급	2	행정2
	6급	3	행정3
	7급	4	행정4
기능직	소계	9	
	8급	1	사무보조(필기)1
	9급	6	통신1, 운전1, 사무보조(필기)2, 사무보조(워드)1, 조무(조무)1
	10급	2	운전1, 사무보조(조무1)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등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0. 10. 6.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58호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등중개정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인천광역시남동구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제3조 및 제8조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하고, 동규정 제6조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며, 동규정 제4조및제10조 관련 [별표1] 및 [별표4]를 각각 “별지1”, “별지2”와 같이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지침중개정지침) 제1장 자치법규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남동구문서심사관지정규정중개정규정) 제2조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동조중 “민원봉사과 문서관리담당”을 “민원지적과 민원호적담당”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남동구정보공개심의회의운영규정중개정규정)제3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및 담당부서실·과장“을 ”문화홍보실장, 민원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및 담당부서 실·과·담당관“으로 하고 동규정 제9조 제2항중 ”문서관리담당,민원관리담당“을 ”민원호적담당“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남동구소비자보호업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 제13조 제1항중 “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22호

공시송달공고

서류의 명칭 : 청문통지서

서류의 내역 : "별첨"

성명 및 상호 : 강옥자 (쉬리멤버십클럽)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67-7

위 청문통지서는 2000년 8월 28일까지 민원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업소가 불분명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오니, 2000. 10. 23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허가취소)할 것을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0.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453-2465)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0-423호

공시송달공고

서류의 명칭 : 처분사전통지서

서류의 내역 : “별첨”

성명 및 상호 : 설은숙 (민속호프)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770-8.9

위 처분사전통지서는 2000년 8월 28일까지 민원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업소가 불분명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오니, 2000. 10. 23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할 것을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0. 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453-2465)

